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심의 · 의결

안건번호 제2018 - 05 - 039호

(사건번호 : 201711조사239)

안 건 명 에스케이텔레콤(주) 대형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에스케이텔레콤(주)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65(을지로2가)
대표이사 박정호

의결연월일 2018. 1. 24.

주 문

1. 피심인은 삼성전자판매(주)가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 및 가입유형별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각 중지시켜야 한다.
2. 피심인은 삼성전자판매(주)가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이용자의 가입유형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행위(삼성전자판매(주))에 가입유형별로 과도하게 차별적인 높은 장려금을 지급하는 행위 포함)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제1, 2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심인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 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9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하며, 피심인의 홈페이지 및 공식 온라인몰에 팝업 창으로 4일간(휴업일 포함)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크기·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제1 내지 3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 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피심인은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금 액 : 26,9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일반현황

-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허가받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이동 전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동전화 전체 보유 가입자 수는 '17.9말 기준 27,048천명(48.6%)이고, 매출액은 '16년도 기준 123,505억원(49.4%)이다.

<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 및 매출액 현황 (단위 : 천명, 억원) >

구 분	가입자 수 (점유율, %)	매 출 액 (점유율, %)
피심인	27,048 (48.6%)	123,505 (49.4%)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매출액 '16년도 기준), MVNO 가입자 제외

나. 대형유통점

- 피심인의 '17년 4~8월까지 삼성전자판매(주) 총 가입자 수는 168,745명이었다.

다. 조사경위

- 삼성전자판매(주)가 갤럭시 S8+를 판매하면서 공시지원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신고(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의 신고를 접수, '17.8.25.)에 따라 사실조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2. 사실조사 결과

가. 조사 대상

- 삼성전자판매(주)가 '17.4.~8월 중 갤럭시S8 피심인 75,276대를 판매한 건에 대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다

나. 행위사실

1) 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15% 초과 지급

- 피심인과 관련된 삼성전자판매(주)의 '17.4~8월 중 갤럭시S8 판매건 75,276건의 판매자료를 분석한 결과,
 - 75,276건 중 2,820명(위반율 3.7%)의 가입자에게 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평균 340,142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피심인의 공시지원금 초과 지급건수 >

구 분	조사대상 건수	공시지원금 초과 지급 건수	공시지원금 초과 지급 평균 수준(원)	위반율 (%)
피심인	75,276	2,820	340,142	3.7

2) 부당 차별지원금 지급

- 삼성전자판매(주)는 피심인과 관련하여, ① 신규 355건에 평균 348,062원, ② 번호이동 2,235건에 평균 348,914원, ③ 기기변경 2건에 246,800원 등 총 2,592건 (3.4%)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법 시행령 제3조) :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공시되는 동일한 공시기간 중에 동일한 이동통신단말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제안하는 경우로 한다.

< 피심인의 가입유형별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위반건수 >

구 분	항목	합 계	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
피심인	대상 건수	75,726	2,509	6,423	66,344
	위반 건수	2,592	355	2,235	2
	차별 지원금(원)	-	348,062	348,914	246,800

3) 부당한 차별지급 유도

- '17.4~8월 중 피심인이 삼성전자판매(주)에 갤럭시S8 단말기 위탁판매 대가로 30만원 초과 최대 50.5만원까지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한 건수가 2,691건이었으며,
- 그 중 40만원 이상 차별적 지원금 지급유도 장려금은 주로 기기변경 가입자모집에 비해 번호이동(1,265건) 가입자모집에 더 많이 집중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 피심인의 장려금 수준별 가입자 모집건수 >

구 분	장려금 30만원 ~ 40만원			장려금 40만원 ~ 50.5만원		
	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	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
피심인	180	1,055	2	189	1,265	0

- 이러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유도 장려금 지급(신규가입 403,062원, 번호이동 403,914원, 기기변경 314,800원)으로 인한 결과로 가입유형간 2,591건(3.4%)의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것을 확인하였다.

< 피심인의 가입유형별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도건수 >

구 분	항목	합계	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
피심인	대상건수	75,276	2,509	6,423	66,344
	위반건수	2,591	355	2,235	1
	차별유도 장려금(원)	-	403,062	403,914	314,800

3. 위법성 판단

가. 관련법 규정

- 단말기유통법 제3조제1항, 제4조제4항 및 제5항, 제9조제3항은 1)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유통점이 가입유형(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을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
- 2)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
- 3) 유통점이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고,
- 4) 이동통신사업자가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대리점에 지시·강요·요구·유도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 단말기유통법 제15조제2항은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제3조

제1항, 제4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이동통신사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이상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단말기유통법 근거 조항 >

◆ 제3조(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 ①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

◆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 ④ 이동통신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 ③ 이동통신사업자는 대리점과의 협정을 체결함에 있어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특정 부가서비스 또는 요금제 등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권유하도록 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사실조사 등)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사무소·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5조(과징금)

-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제4항,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제3항, 제8조제4항 또는 제9조제2항·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3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제3조제1항, 제4조제5항·제6항, 제5조제1항 또는 제7조제2항·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이동통신사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위법성 판단

- 삼성전자판매(주)가 피심인과 관련된 일부 이용자에게 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급한 행위는 단말기유통법 제4조(지원금 과다지급 제한) 제5항을 위반한 것이고,
- 삼성전자판매(주)의 단말기유통법 제4조제5항 위반행위 2,820건이 확인된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삼성전자판매(주)가 피심인과 관련된 이용자에게 가입유형(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별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 행위는 삼성전자판매(주)가 단말기유통법 제3조(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제1항제1호를 위반한 것이고,
- 삼성전자판매(주)의 단말기유통법 제3조제1항제1호 위반행위 2,592건이 확인된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피심인이 삼성전자판매(주)에게 가입유형 간 차별이 있는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삼성전자판매(주)가 '부당한 차별적 지급행위'를 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위 행위는 삼성전자판매(주)로 하여금 가입유형에 따라 이용자에게 지원금이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되도록 유도한 행위로서 단말기유통법 제9조(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시정조치 명령

가. 위반행위의 중지

피심인은 단말기유통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삼성전자판매(주)가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 및 가입유형별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각 중지시켜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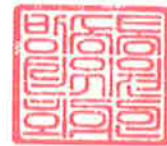
또한, 피심인은 단말기유통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피심인의 유통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의 가입유형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행위(유통점에 가입유형별로 차별적인 높은 장려금을 지급하는 행위 포함)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피심인은 단말기유통법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라 위 시정조치 명령 “가”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심인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9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하며, 피심인의 홈페이지 및 공식 온라인몰에 팝업 창으로 4일간(휴업일 포함)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크기 및 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공표문안 >

○○○(사업자명)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



○○○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삼성전자판매(주)가 ○○○과 관련된 이용자에게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면서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고 가입유형별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 행위와 삼성전자판매(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위반행위 중지 등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018년 00월 00일

○○○(사업자명) 대표자 ○○○

※ 공표문 크기 A2(42cm × 59.4cm), 활자크기 2.0cm×2.5cm이상

다. 이용자의 신규모집 금지 판단

피심인은 최근 3년간 동일한 위법 행위가 3회 반복된 점으로 볼 때, 단말기유통법 제14조제2항제7호에 따라 신규모집금지 적용 요건에 해당되나,

이동통신 전체시장이 아닌 부분시장(대형유통점)에서 발생한 위반행위이고, 삼성전자판매(주)의 위반행위 기간('17.4~8) 중 삼성전자판매(주)의 가입 규모가 피심인의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3%로 미미하며, 삼성전자판매(주)의 피심인과 관련된 위반율이 3.7%로 매우 작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재 시 소비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제재의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므로 신규모집금지 조치는 명하지 않기로 한다.

※ 피심인 최근 3년간 동일유형 위반행위 i) 시장과열 제재('15.3.26), ii) 외국인영업 제재('17.3.21), iii) 대형유통점 영업 심결('18.1.24)

라. 시정명령 이행계획서 제출

피심인은 단말기유통법 제14조제2항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 및 나.의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

피심인은 단말기유통법 제14조제2항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과징금 부과

가. 기준금액

○ 피심인의 단말기유통법 제9조제3항 위반 행위와 피심인 관련 삼성전자판매(주)의 같은 법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5항 위반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별표2], 고시(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에 의해 피심인에게 아래와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 피심인의 위반기간 동안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피심인의 매출액(이하 '관련매출액'이라 한다)은 2,691,462,708원이다.

피심인의 삼성전자판매(주) 관련매출액 : 위반가입자수(2,820명) × 평균가입기간(25.8개월) × 가입자당월평균수익(36,993원) = 2,691,462,708원

-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위 '고시(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별표1]'에 따라, 위반율이 3.7%인 점과 과다지원금 지급 수준, 가입유형별 차별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심인에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율(1% 이상 2% 미만)을 부과하되, 그 범위 중에서 1%로 정한다.

<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별표1] 부과기준율 >

중대성의 정도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3% 이상 4%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2% 이상 3%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 이상 2% 미만

- o 이에 따라 피심인의 기준 과징금은 위 관련매출액(2,691,462,708원)에 1%의 부과기준율을 곱한 26,914,627원이다.

나. 필수적 가중·감경

해당 사항 없다.

다. 추가적 가중·감경

해당 사항 없다.

라. 과징금의 결정

이에 따라 피심인에 대한 최종 과징금은 2,690만원(십만원 이하 절사)이다.

6. 결론

상기 피심인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4조(시정명령), 제15조(과징금)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위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 부터 제27조에 따라 동 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도 같다.

위 원 장 이 효 성



부위원장 허 욱



위 원 김 석 진



위 원 표 철 수



위 원 고 삼 석

